

FIP-2009-0039 (통권 제163, 2009. 12. 16)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방안

ISSUE  
PAPER



## Contents

### < 요약 >

I. 검토 배경 .....	1
II.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현황 .....	2
III.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시 문제점 .....	7
IV. 개선방안 .....	12

- FKI Issue Paper는 경제 및 정치·사회분야에서 우리 모두가 대비해야 할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정책대안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본회 금융조세팀 강호성 선임조사역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3771-0497 FAX : 6234-5301 E-mail : hosu@fki.or.kr



## ● ● ● 요약 ● ● ●

-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준비 부족 등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 2011년 도입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 도입착수도 못하고 있는 실정
  - 회계시스템 구축 등 각종 투자비용 증가, 관련 법령과 제도 미비 등 도입준비와 관련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문제점
  - (도입 준비 부진) 2011년 의무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2009년 초부터 기업 전체의 대대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
  - (비용 부담)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경색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IFRS 도입 비용은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세법 정비 미비)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능력 부족) 국제회계기준의 핵심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국제회계기준 변경 가능성) 미국은 2014년 IFRS 도입(2011년 도입여부 결정)에 맞춰 미국에게 적합한 회계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부채증가 가능성)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 기업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부채총계가 5% 가량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부채총계도 증가할 가능성
- 개선방안
  - 새로운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 등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동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 요청
  -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과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이중 장부관리 등의 비용발생 및 세부담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대책 마련 필요
  - 기업은 국제회계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정부는 IFRS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 인력개발 지원 강화



## I. 검토 배경

- 정부는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기준 선진화의 일환으로 국제회계기준을 2011년부터 도입하는 로드맵 발표('07.3)
  - 자산 2조원 이상인 상장기업은 2009년부터 국제회계기준의 조기도입을 허용하고, 자산 2조원 미만 모든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도입 의무화
  - \*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적용
  
- 기업은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관련하여 도입준비 부족 등으로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
  - 2011년 도입까지 채 2년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 기업들이 아직 도입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회계시스템 구축 등 각종 투자비용 증가, 관련 법령과 제도 미비 등 도입 준비와 관련하여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상장기업들에게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과 관련한 지원책 필요
  -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동 비용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기업의 회계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
  
- 이에 본 보고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함

## Ⅱ.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 현황

### 1. IFRS의 개념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서 및 국제회계기준해석서를 통칭
  - '89년 IASC\*에 의해 승인 및 공표되었고, '01년 새로 설립된 IASB\*에서 공식적으로 IASB 개념체계로 채택
- \* IASB(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 국제회계기준위원회, 前 IASC)  
: EU를 중심으로 주요국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미국3, 영국3, 프랑스2, 호주, 스웨덴, 남아공, 일본, 중국)되어 있으며 보조기구로서 SAC(Standards Advisory Council), IFRIC(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Interpretations Committee) 등이 있음

### 2. IFRS 도입 배경

- 우리나라 회계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
  -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회계감독의 강화 및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회계기준 미사용국'으로 분류되어 국제자본시장에서의 회계정보 신뢰도가 낮음
- 국내기업의 신인도 개선으로 해외 자본유치 용이
  - 재무제표의 국제적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 회계투명성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여 해외 자본유치에도 용이
- 글로벌 기업들의 회계장부 이중작성 부담 경감
  - 국내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할 경우 해당 국가의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고 외부감사도 받게 되므로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 미국은 IFRS를 적용한 제3국 기업에 대해 차이조정 의무를 면제했으며('07.11월 이후 제출분부터 적용), EU는 제3국 기업에 대해 IFRS적용을 의무화(EC로부터 회계기준에 대한 동등성을 인증 받는 등 일정요건 충족시 11년까지 적용유예)



### 3. IFRS 적용대상 및 적용시기

- 상장기업만 IFRS를 의무도입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회계기준을 제정·적용 (비상장기업 중 희망기업은 IFRS 도입이 가능하되, 적용 이후에는 변경 불가)
- 2009년부터 우선 적용할 수 있으며(금융사 제외) 2011년에는 상장사 전체가 의무 도입
  - \* 국제회계기준의 분·반기 연결재무제표작성은 기업의 작성 부담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은 2011년부터 자산 2조원 미만 상장기업은 2013년부터 적용됨 (연말결산 사업보고서는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2011년부터 작성)

### 4. IFRS와 현행 회계기준과의 주요 차이점

- 공시체계의 차이(개별재무제표 vs. 연결재무제표)
  - 현행 : 대부분의 공시는 개별회사 중심의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하고 연결재무제표는 부수적으로 기말 보고서에서만 차후에 공시
  - IFRS :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공시
- 자산·부채의 평가방법 차이(취득원가 vs. 공정가치)
  - 현행 : 정보의 신뢰성을 중시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평가
  - IFRS : 취득원가 또는 정보이용자에게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가능(단, 취득원가 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지속적으로 적용해야 함)
- ex) 투자부동산, 충당부채, 금융부채, 유형자산, 채권채무조정, 보험부채측정, 영업권 및 부의영업권 등

-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 현행 :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 IFRS :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 ex)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sup>1)</sup>, 상환우선주의 자본처리<sup>2)</sup> 등

< 국내회계기준과 국제회계기준의 차이점 비교 >

구분	국제회계기준	국내회계기준
공시체계의 차이 (주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분·반기보고서 등 모든 공시서류가 연결회사 전체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 공시	개별재무제표를 원칙으로 공시
자산부채 평가방법	원칙적으로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운 항목들에 대하여는 취득원가로 평가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기준의 차이	거래의 실질에 맞는 회계처리방법을 규정	법률 및 정책적 목적에 따라 현실 고려, 일부 항목에 대해 특정한 회계처리를 규제 또는 허용
	연결범위(50% 초과 지분보유+실질지배력)	연결범위(30% 초과 최대주주+실질지배력)

1) 금융기관 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나 IFRS는 발생손실 추정액을 인식하도록 규정함  
 2) 한국회계기준에서는 자본처리(상법)하는 반면 IFRS는 부채처리함

## 5. IFRS의 해외 도입 동향

-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100여 개국이 IFRS를 수용 또는 수용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수용국가가 150여 개국으로 늘어날 전망

### □ EU

- \* 2005년부터 모든 상장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IFRS 적용 의무화
- \*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하여는 각국마다 다름
- IFRS 의무적용 : 7개국(이탈리아, 그리스, 체코 등)
- IFRS 또는 자국회계기준 선택 적용 : 10개국(영국, 네덜란드 등)
- IFRS 허용하지 않고 자국회계기준 적용 : 8개국(프랑스, 독일 등)
- 미국과 일본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미온적이었으나, 최근 자국회계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으로 변경·적용하는 방향으로 입장 선회

### □ 미국

- \* '08.11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내 상장된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 로드맵을 발표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기업에 대해 '09년부터 IFRS 조기적용을 허용, '11년까지 IFRS 도입여부를 결정할 예정
- '11년 IFRS 도입 결정 경우, 미국 내 자국기업에 대해 '14년부터 IFRS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 □ 일본

- \* '09.2 금융청 산하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일본의 국제회계기준 취급에 대해서'라는 중간보고서에서 기존의 개정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
- 빠르면 '10년 3월 결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들에 대해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인정
- 이후 '12년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모든 상장기업들에 대해 강제할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 실무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최소한 3년 이상)을 거쳐 일제히 국제회계기준으로 이행

## &lt; IFRS 해외 도입현황 &gt;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ASB 제정 IFRS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서 각각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인증 프로세스(Endorsement mechanism)를 두어 수정 적용할 예정</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캐나다회계기준위원회(AcSB)는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 '11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IFRS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공식발표('08.2)</li> </ul>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FRS를 일부 조정한 Australian equivalents to IFRS (AIFRS)를 '04.7월 제정하여 자국 기준화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05년 이후 적용</li> <li>- AIFRS는 회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대상회사 모두에게 적용하도록 의무화 (보고대상회사는 상장기업, 소규모가 아닌 비상장기업, 외국계기업의 자회사가 모두 해당)</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국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와 IASB는 '02년 미국회계기준과 IFRS의 합치를 합의</li> <li>○ '06년 FASB와 IASB는 US GAAP과 IFRS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보다 공통된 새로운 기준의 수립이 더 효과적이라는 원칙하에 기준합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정</li> <li>○ '07년 미국 SEC는 미국 상장된 외국기업이 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US GAAP과의 차이조정 의무를 '07.11 이후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면제하는 규정을 마련</li> <li>- 뉴욕증권거래소에만 약 1,200개 해외기업이 상장, 그 동안 자국회계기준에 따른 보고서 이외에 U.S. GAAP 보고서 작성으로 회사당 연간 약 1~10백만달러의 추가 부담</li> <li>○ '08.11월 미국 SEC는 미국 내 상장된 자국기업에 대한 IFRS 도입을 로드맵과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희망기업에 대해 IFRS 조기적용을 허용하는 규정안을 제안, '11년까지 IFRS를 적용을 의무화할지 판단할 예정</li> <li>- '11년 IFRS 도입 결정 경우, 미국 내 자국기업에 대해 2014년부터 IFRS를 단계적으로 의무적용</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년 3월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와 IASB간 회계기준 합치에 합의</li> <li>○ '07년 8월 ASBJ와 IASB는 일본 GAAP과 IFRS의 합치작업 가속화 협정 체결</li> <li>- 협약의 일부로 '08년까지 일본 GAAP과 IFRS의 주요한 차이를 제거하고, 기타 차이점은 '11년 6월 이전까지 제거할 예정</li> <li>○ '09년 2월 금융청 산하 기업회계기준위원회가 발표한 '일본의 국제회계기준 취급에 대해서'라는 중간보고서에서 기존의 개정에서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li> <li>- 빠르면 '10년 3월 결산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들에 대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적용을 인정함</li> <li>- 이후 '12년에 국제회계기준의 적용을 모든 상장기업들에 대해 강제할지 여부를 판정하여 그렇게 판단되는 경우 실무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최소한 3년 이상)을 거쳐 일제히 국제회계기준으로 이행함</li> </ul>

### Ⅲ.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문제점

#### 1. 도입 준비 부진

- 2011년 의무 도입을 위해서는 최소한 2009년 초부터 기업 전체의 대대적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
- 기업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 2년(29.9%)~3년(36.5%)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 기업도 8.3%에 달함(전경련 '07.11)
- IFRS 의무적용 기업 1,906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26.5%만이 도입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남(금감원 '09. 3)
- 금융회사의 45.7%, 자산 5천억원 이상 일반기업의 64.5%가 도입에 착수한 반면, 자산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은 11.1%로 낮게 나타남(금감원 '09. 3)

#### 2. 적지않은 비용 부담

- 글로벌 금융위기와 신용경색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IFRS 도입 비용은 기업경영상 적지않은 애로사항으로 작용
- 현행 계획대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추진될 경우 각 기업별 수용여건에 대해, 대부분의 기업(86.5%)이 조직구성, 비용 상 부담이 된다고 응답(전경련 '07.11)
- 다수 기업(66.3%)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해서는 ERP 시스템의 재정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채용 등 준비과정에서의 비용, 인력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전경련 '07.11)

- IFRS 평균 도입추정비용은 기업특성 및 용역범위 등에 따라 다르나 일반기업 5.7억원\*과 금융회사 34.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시스템 구축비용이 49.9%, 외부 컨설팅비용이 35.6%를 차지(금감원 '09.3)

\* 상장기업 11.1억원, 코스닥기업 2.5억원. 자산규모별로는 5백억원미만 기업은 1.2억원, 5백억~1천억원 기업은 2.6억원, 2조원이상 기업은 39.1억원 등

\*\* 은행 179.7억원, 증권·선물 9.8억원, 보험 26.3억원 등

### 3. 세법 정비 미비

-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간의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 세법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의한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기업은 기존의 세법에 의한 회계시스템과 국제 회계시스템을 이중으로 유지
-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 등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한 감가상각비에 대해 세법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세금부담이 발생할 가능성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외화를 기능통화<sup>3)</sup>로 설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경우 현행 세법은 기능통화의 개념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기업은 세무목적의 별도 장부 및 재무제표를 유지해야 하는 부담 발생

3) 기능통화는 보고통화(표시통화)와 대비되는 것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를 말함. 가령 IFRS 도입 해운업체는 업종 특성상 달러거래가 많은 점을 고려 재무제표를 달러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함. 이에 연말 달러를 원화로 환산하여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됨

< IFRS와 세법의 차이 >

구분	기업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세법
<자산·부채평가>	원가법 -유형자산에 대한 재평가 -유가증권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시가평가	공정가치평가 도입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상품 등 전체적으로 공정가치 평가를 도입	원가법
<유형자산과 감가상각> 재평가 감가상각방법의 재검토	허용 없음	허용 매년 재검토	불허 없음
<무형자산> 평가 감가상각	원가법 20년 이내 상각	재평가 허용 내용연수별로 구분 -한정: 감가상각 -비한정(예:영업권): 손상평가(1)	원가법 법에 열거된 기간내 상각
<기능통화>	있음	있음	없음
<퇴직급여> 퇴직급여 측정	청산개념(2)	예측개념(3) (보험수리적 가정)	청산개념
<재고자산> 후입선출법 인정여부	인정	인정 안함	인정
<건설공사 수익인식>	진행기준	완성기준	진행기준
<상환우선주 분류>	자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부채 혹은 자본	자본

\* 주 : (1) 매년 상각을 금지하고 손상징후 발생시 손상평가하여 비용산정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전 직원이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3) 미래에 지급 예상되는 퇴직금을 시장이자율로 할인한 금액

#### 4.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능력 부족

-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국제회계기준 핵심인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
  - 영국과 호주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비율이 각각 99%와 99.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작성비율이 46.7%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던 중소 상장기업들\*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야 하는 부담도 같이 증가
  - \*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결제외 대상(외감법 시행령)이나, 국제회계기준은 연결대상에 포함
  - 현실적으로 감사인이 연결재무제표와 주식 작성에 도움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능력 배양이 필요

#### 5. 국제회계기준 변경 가능성

- 미국은 2014년 IFRS 도입(2011년 도입여부 결정)에 맞춰 자국에 적합한 회계 기준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미국이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가장 많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국제회계기준이 변경될 경우 2011년 전면도입을 한 국내기업들은 2014년 이후 기준 변경에 따른 회계시스템 재구축, 재교육 등을 위해 인력 및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어 부담으로 작용



## 6. 국제회계기준 도입 시 부채증가 가능성<sup>4)</sup>

- 2005년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영국의 기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부채총계가 5% 가량 증가
-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부채 인식기준의 변화는 큰 틀에 있어 영국과 국내 기업 간에 별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기업의 부채총계 증가율은 영국에 비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

---

4) 한국경제연구원(황인태·한봉희·강선민),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p.109-112, 2009

## IV. 개선방안

### 1. 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관련 세제 지원

-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발, 구축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동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
- 국제회계기준 도입 초기임을 감안, 회계기준 변경으로 법인세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일정기간 과세이연 적용 필요

### 2. 세법·법규정 보완

- 국제회계기준과 세법과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의 이중 장부관리 등의 비용발생 및 세부담 변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 감가상각방법 변경, 기능통화 개념 등
- 기존 기업회계기준을 근거로 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률 역시 사전에 충분한 조사·검토를 통해 국제회계기준과 상충되는 사항이나 미비사항을 사전에 정비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 상환우선주 처리기준 등
- 국제회계기준의 세부실무지침이 부족한 점을 감안,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혼란이 없도록 명확한 세부지침 확립이 필요

### 3. 회계인력의 양성과 교육

- 원칙 중심의 국제회계기준 채택은 기업의 자율적 판단이 요구되기 때문에 회계관련 전문 인력개발이 무엇보다 중요
- 기업은 회계전문인력 충원과 동시에 사내교육과 외부 기관의 교육 등을 통해 회계전문인력 양성 및 회계실무능력 배양에 매진하여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노력
- 정부는 기업의 회계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IFRS 설명회,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한 시의성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

## < 참고문헌 >

- 서정우, 한국회계제도의 세계화 : 기업회계기준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6월 제2호, 1997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의견 :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2007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국제회계기준 적용시 상장회사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2007
- 정건영,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008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2008.11.6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동향 제26호, 2008.11.20
- 금융감독원, IFRS 도입 관련 주요 현안 설명, 2008.12.18
- 한국경제연구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2009
- 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제연구원,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2009.3.5
- 한국국세신문, '국제회계기준' 수용 전선에 이상없나, 2009.3.13
- 금융감독원,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관련 설문결과, 2009.4.3
- 국제금융센터, 일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추진 현황, 2009.4.10
- 한국국세신문, 회계의 국경초월·선진화 초석 - 국제회계기준 왜 도입하나, 2009.4.24
- 한국국세신문, IFRS 도입 앞서 법령·제도개선 시급, 2009.5.1
- 한국국세신문, 'IFRS 세법 개정 언제되나' 기업 스트레스, 2009.5.22
-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맞춤형 기업대응전략 세미나 자료, 2009.6.5